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
----------	----

2018. 9. 19.(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8년 8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8월 30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9월 5일

-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민광기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18년 하반기 경제중심
조직개편에 대한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분장사무 조정>

○ 이 관 (안 제6조)

-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 행정국 → 기획관리실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호식)

- 이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18년 하반기 경제중심 조직개편에 대한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행정국 소속이었던 세정과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려는 것임.
- 세정과의 업무가 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국은 기존 6과에서 5과로, 기획관리실은 기존 혁신담당관과 법무통계담당관을 통합하고 세정과 업무를 이관 받아 5과 체제를 유지하게 됨.
- 도정목표 및 공약실현, 현안사업 등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정비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호
의결 연월일	2018년 월 일 (제367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8년 8월 28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
----------	----

제출연월일 : 2018년 8월 2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18년 하반기 경제 중심 조직개편에 대한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분장사무 조정>

- 이 관(안 제6조)
 -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 행정국 → 기획관리실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세, 세입지도, 세무지도,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제7조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7. (생 략)</p> <p><u><신 설></u></p> <p>8. ~ 13. (생 략)</p>	<p>제6조(기획관리실)-----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u>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u></p> <p>9. ~ 14. (현행 제8호부터 제13호 <u>까지와 같음</u>)</p>
<p>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p> <p>1. ~ 11. (생 략)</p> <p>12.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u>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 항</u></p> <p>13. ~ 17. (생 략)</p>	<p>제7조(행정국)----- -----.</p> <p>1. ~ 11.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12. ~ 16. (현행 제13호부터 제17 <u>호까지와 같음</u>)</p>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